우암학원 창학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9681호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음력 1월 12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문턱 낮췄는데"… 광주·전남 주민조례 제정 0건

주민조례발안 조례 제정 1년

1년간 광주·전남 2건 신청 불구 서명 정원 못채워 요건 못갖춰 청구권자 150분의1로 완화에도 홍보 부족… 주민 인지도 낮아

#광주시민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주민 공론장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 기관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주민조례청구 홈페이지인 '주민e 직접'에 접수했다. 이 조례는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A씨가 청구인 명부 제출 전에 접수를 취소하며 반려됐다. A씨는 조례 신청을 위한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에선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 28명이 지난해 1월13일 '전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 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를 접수했다. 해당 조례는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지 않아 부적격 심의를 받고 각하됐다. 당시 조례를 주도한 박형대 연대회 정책위원장이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법)이 시행 1년을 넘겼지만 광주·전남에선 주민 조례 제정 실적이 단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3일 주민조례법 시행 이후 시·도 주민 조례 제정 건수는 모두 0건으로 조사됐다. 주민조례법을 통해 이전보다 청구권자 총수 기준 등 '문턱'을 낮췄는데도 조례 제정 건수가 전무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조례 제정이 저조한 데는 주민들이 청구 기준 조건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남에선 2건의 주민 조례가 신청됐다. 하지만 2건 모두 서명 정원을 채우지 못해 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광주·전남은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해 청구권자 150분의1이 서명해야 한다. 올해 기준 광주 8034명, 전남 1만498명이다.

현재 법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9세 이상 주민(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를 받아야 했던 '주민 발의 제도'에서 낮아진 기준이지만, 여전히 조례 청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민조례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 청구(대표자) △청구사항 공표(의회) △서명·명부 제출(대표자) △명부 공표·열람(의회) △이의신청(청구권자) △이의신청 심사(의회) △수리·각하 심사(의회) △발의(의장) △심의·의결(의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대표자는 6개월의 서명 요청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 조례를 활성화해 참정권을 키우려면 더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청구하더라도 서명 절차에서 인원을 모으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의회 소식지,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현수막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수협·산림조합)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1일 광주 북구선관위가 북구의 한 거리에 공명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홍보 활동에 나섰다. 김양배 기자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 '1년 연장'… 진상규명 탄력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기간이 1년 연장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우편 접수된 건수까지 포함해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완료됐었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113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건의, 국회의원 설득 등을 통해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힘을 모았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김영록 전남지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모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19일 제74주기 합동추념식에서 도지사로서 유가족들에게 드렸던 신고기간 연장 약속을 지키게 돼 더욱 뜻 깊다"면서 "그동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을 비롯, 여순유족회와 지역사회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70년 이상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이 직접 신고할 용기를 내기까지 1년은 너무나 짧았다"면서 "다행히 신고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신고는 위원회(02-2076-5300)와 실무위원회(061-286-7881~3)에 직접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 기업 (유)탑환경건설·(주)탑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탑환경건설 (주)탑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